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	□에 √ 표시들	합니다.	15000		56.0		(1쪽)
발주자 (발주부서)	발주기관:	발주기관: 서울디자인재단		발주부서: 홍보팀 별		짜: 2023. 11. 15.		5.
	발주내용					□ 공사	▼ 8	3역
	: 2024년 캘린더, 다이어리 세트 기획 및 디자인					□ 물품	□ 2	타
	수의계약 사유							
: 기념품 디자인 제작 업무 수행 실적 보유, 제작 기간 확보를 위해 신속 추진 필요								
계약상대지 (확인인)			소속(업체명):	썸무드 디자인		☞ 개인		법인
				(SOME MOOD DESIGN)		□ 단체	□ 2	타
	연락처:	락처: 010-5221-4497 주소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32길 3, 2층(정릉동)						동)
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								
(1)	발주기관의 대표이사, 배우자, 대표이사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				예	▼ 아∟	오
						□ 해당없음		
@	계약 업무을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직원, 배우자, 직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				□ 예	▼ 아니	오
2						□ 해당없음		
3	발주기관의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서울특별시 소속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				<u></u> 예	▼ 아니	오
						□ 해당없음		
(4)	재단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?					□ 예	▼ 아니	오
						□ 해당없음		
(E)	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					□ 예	☞ 아니	오
(5)	단체 에 해당하는가?				□ 해당없음			
6	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							
	사업자(임직원, 배우자, 임직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					예	▼ 아∟	오
						□ 해당없음		
	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							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제12조 및 재단「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」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3년 11월 15일

(재)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중

계약상대자(대표자):

제9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·용역·공사 등의 수의계약(이하 "수의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할 수 없다. 다만, 「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- 1. 대표이사
- 2. 재단 계약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직원
- →법령상 담당하는 직원 :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(즉,재무팀 계약 담당자와 결재권자를 의미)
- →사실상 담당하는 직원 :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
- 3. 서울특별시 소속 고위공직자
- →서울특별시장, 행정1부시장, 행정2부시장, 정무부시장, 여성가족정책실장, 기획조정실장, 경제정책실장, 복지정책실장, 안전총괄실장, 소방재난본부장, 자치경찰위원회장, 자치경찰사무국장, 국제관계대사, 서울시립대학교 총장,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, 도시기반시설본부장
- 4. 「지방자치법」제41조에 따라 재단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
- →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·비속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
- 7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
- ② 재단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